

신구조문 대비표 -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 (보증처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제 2조 용어의 정의 1. “은행”이란 신청인과 지급보증 약정을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p>	<p>제 2조 용어의 정의 1. “은행”이란 신청인과 지급보증 약정을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p>	오타수정
<p>제4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처는 이행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에 보증기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피보증채무에 한하여 보증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p>	<p>제4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처는 이행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에 보증기간내에 발생하는 피보증채무에 한하여 보증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p>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
<p>제7조 (지급보증의 해지) 지급보증을 해지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지급보증서 원본을 회수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나, 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지급보증서 원본이 반환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p>	<p>제7조 (지급보증의 해지) 지급보증을 해지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지급보증서 원본을 회수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나, 보증기간(별도의 청구기일이 표시된 경우 청구기일) 경과 후에는 지급보증서 원본이 반환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p>	청구기일 추가
<p>제9조 (분실, 도난 또는 멸실) 지급보증서의 원본을 분실하거나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어떠한 사고에 대하여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제9조 (분실, 도난 또는 멸실) 지급보증서의 원본을 분실하거나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어떠한 사고에 대하여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오타수정
<p>제11조 (약관적용 및 교부) 3.은행은 신청인에게 지급보증거래 약정시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을 교부합니다.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을 기재한 지급보증서 원본을 보증처가 접수한 때 은행은 보증처에게 약관을 교부한 것으로 합니다.</p>	<p>제11조 (약관적용 및 교부) 3.은행은 신청인에게 지급보증거래 약정시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을 교부합니다.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을 기재한 지급보증서 원본을 보증처가 접수한 때 은행은 보증처에 약관을 교부한 것으로 합니다.</p>	